

##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4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합리화 및 구체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검지·경보설비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검출부 설치위치	검출부 설치 위치 구체화 (안전원고시 제2017-10호 문구를 제2019-4호로 이동)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 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내화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 적용대상을 구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경우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장혼선 해소

###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5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기존시설 판단기준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방안 마련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